

금융서비스

제13장(금융서비스)의 구조

- ▣ 한·미 FTA상의 금융 분야는 제13장 본문, 제13장 부속서(총 4개) 및 부속서Ⅲ(금융서비스 유보)에 의해 규율
 - 부속서 13-가 : 국경간 무역
 - 부속서 13-나 : 구체적 약속
 - 부속서 13-다 : 금융서비스위원회
 - 부속서 13-라 :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

제13장 적용범위 (제13.1조)

- ▣ 제13장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의 요건(제13.1조제1항)
 - ① 상대국의 금융기관
 - ②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및 그 투자
 - ③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
- ▣ 제13장 적용 배제 사항(제13.1조제3항)

- 공적퇴직연금제도(예: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) 및 법정사회보장제도(예: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)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
- 중앙은행(예: 우리나라의 한국은행), 통화관련 국가기관(예: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)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(예: 수출입은행 등)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
 - ※ 다만, 제13장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금융기관(보험회사, 은행, 증권회사 등)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제13장이 적용됨(제13.1조제3항).

- ▣ 또한, 제11장(투자) 및 12장(국경간 서비스무역)이 제13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, 제13장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11장·제12장상의 일부 의무도 적용
 - 제11장상 의무 중에서는 수용 및 보상, 송금, 투자와 환경, 혜택의 부인,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가 적용되며,
 - ※ 그 중 수용 및 보상·송금·혜택의 부인·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는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.
 - 제12장상 의무 중에서는 혜택의 부인(제12.11조)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.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지불 및 송금(제12.10조) 의무가 적용

〈 제13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는 11장·12장상 의무 〉

	11장상 의무	12장상 의무
ISD 대상이 되는 의무	<input type="radio"/> 수용 및 보상 (제11.6조) <input type="radio"/> 송금 (제11.7조) <input type="radio"/> 혜택의 부인 (제11.11조) <input type="radio"/>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(제11.13조)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ISD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	<input type="radio"/> 투자와 환경 (제11.10조)	<input type="radio"/> 혜택의 부인 (제12.11조) <input type="radio"/> 지불 및 송금 (제12.10조)* <small>* 단, 국경간 금융서비스무역이 제13.5조에 따른 의무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만</small>

일반적 의무

■ 내국민대우(National Treatment, NT, 제13.2조)

- 금융기관, 그에 대한 투자,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‘동종의 상황’에서 자국의 금융기관, 그에 대한 투자,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

■ 최혜국대우(Most Favored Nation Treatment, MFN, 제13.3조)

- ‘동종의 상황’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, 금융기관, 그에 대한 투자,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, 금융기관, 그에 대한 투자,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

■ 시장접근(Market Access, MA, 제13.4조) 제한 조치 도입 금지

-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,

ⓐ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 금지

- ① 금융기관의 수,
- ② 금융서비스 거래 · 자산의 총액,
- ③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,
- ④ 자연인의 총 수

ⓑ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·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

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, SMBD, 제13.8조)

- ①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의 국적 제한,
- ②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·자국 거주 요건의 부과 금지

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 (제13.5조 및 부속서 13-가)

- ▣ 양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를 (1)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*와 (2)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**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
 - * 예) 해상 보험, 상업적 항공 보험, 화물운송 보험 등
 - ** 예) 투자자문, 기업구조조정자문, 보험계리, 손해사정 등
- 한·미 FTA에서는 부속서 13-가에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여타 금융 서비스는 국경간 무역 허용 대상에서 제외

«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»

분야		우리나라	미국
보험	(1) 해상·항공·우주보험	○	○
	(2) 수출입적하보험	○	○
	(3) 재보험 및 재재보험	○	○
	(4) 보험 중개·대리	(1)~(3) 관련 보험에 한정	전면 개방
	(5) 보험부수서비스*	○	○
은행 기타 금융	(1) 금융정보 제공	○	○
	(2)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	발효시점으로부터 2년 후 개방	즉시 개방
	(3)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**	신용평가, 신용조회·조사 서비스 제외	전면 개방

* 보험자문서비스, 보험계리서비스, 위험평가서비스, 손해사정서비스 등

**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·자문, 기업구조조정·전략수립 자문 등

신금융서비스 [제13.6조 및 제13장 서한 '신금융서비스']

▣ 허용 요건

-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급 가능(제13장 서한 신금융서비스)
 - ※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·거래되고 있으나,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
- ①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
 - ② 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국 국내법상 허용될 것
 - ③ 해당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

▣ 적용 배제 사항

-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

▣ 당사국의 권한

-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 결정 가능
-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건별 인가제도 운용 가능
-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 적용 가능

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(제13.10조 제1~4항)

- ▣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목적 조치를 도입 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(제13.10조제1항).
 - 투자자, 예금자,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
 -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
 - 금융제도의 완전성·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
- ▣ 건전성 조치 외에도, 비차별적인 통화·신용·환율 정책, 비차별적 금융 관련 송금 제한 조치, 금융 사기 및 범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제13장의 예외가 됨을 확인(제13.10조 제2,3,4항)

자율규제기구 (제13.12조)

- ▣ 상대국 금융기관이 당사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협회(자율규제기구)에 가입하거나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, 당사국의 관련 협회는 자국 또는 제3국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됨.

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(부속서 13-나 제1절 제4항)

- ▣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.
 - 우리나라 현행법(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)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해외 운용위탁만 허용

- 원화표시자산 해외 운용위탁은 발효일 후 2년내에 재협의하기로 함.

※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(국내 유가증권 등)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, 외화로 표시된 자산(미국 유가증권 등)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.

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

-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함 (부속서 13-가 제6항나호, 부속서 13-나 제2절).
- 한편,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·저장을 위한 IT설비,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.
- 또,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 하에서 유예기간(한·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)을 두고 개방(제13장 서한 정보의 이전).
 - ① 소비자 민감 정보 보호
 - ② 위탁받은 민감 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
 - ③ 해당 위탁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우리 금융 당국의 권한 확보
 - ④ 기술설비 위치 요건 등

“후선업무(back-office) 기능의 위임”허용 [부속서 13-나 제3절]

- 후선업무 기능이란,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·예금·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채용·인사·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, 아래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.
 - ①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

- ② 데이터처리,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
 - ③ 조달, 출장 지원, 우편 서비스, 물리적 보안,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
 - ④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
 - ⑤ 은행정산업무, 예산수립, 보수, 세금, 회계조정, 그리고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, 그리고
 - 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
- 양국은 '실행가능한 한도'에서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

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방법 (부속서13-나 제4절)

-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행정지도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
※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
- 구두 행정지도가 있은 후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함.
- 또한,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함.

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(부속서 13-나 제6절)

- 한·미 FTA에서 양국은 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 등에 대해,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
※ 한·미 FTA상 합의내용과는 별개로, 농협 보험 부문의 경우 2012년

3월부터 여타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 적용 및 금융위 감독을 받음.

양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(부속서13-나 제7절)

- ▣ 양국은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

※ 참고로, 2010년 6월에 우리 금융위원회와 미국 금융당국(FRB, OCC, FDIC, OTS)간 MOU를 체결하였음.

금융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(제13.1조제4항, 부속서 13-나 제8절)

※ 금융정부조달이란 정부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의미하는 바, 그 예로는 ① 국민연기금의 운용 ② 국고계좌 개설 등이 있음.

- ▣ 양국은 금융정부조달의 경우 아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

- 국채 관련 금융서비스(발행, 매수, 분배 등)
 - 국고계좌 개설 관련 금융서비스
 - 미국의 경우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 자산, 우리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서비스
- ※ 상기 3개 분야는 현행 법령하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참여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.

우체국보험 건전성 강화 (제13장 서한 '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')

- ▣ 양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을

인정하면서 아래 사항에 합의

-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,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 제도 유지(제1항)
 - 금융위원회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(제2, 3, 8항)
 - 금융위는 ①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, ②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·기초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의견·권고를 제시
 -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
 - 한·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
 -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서비스 관련 상품의 특정적 광고를 할 경우,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요건 적용(제4, 8항)
 - 한·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
 -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, 퇴직연금보험,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은 제한(제5항)하되,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
 -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물가상승분 반영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, 사전에 금융위와 협의 필요

국책금융기관의 취급

제13장 서한 '일정 정부 기관', 부속서Ⅲ 대한민국 유보목록 12번째 유보]

-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 기재

※ 대상기관(총13개) : 한국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

KR&C(前 정리금융공사)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K-sure
 한국무역보험공사(前 한국수출보험공사), 한국투자공사, 한국산업은행,
 기업은행, 농협, 수협, 한국주택금융공사

- 상기기관중 한·미 FTA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(총 8개)
 - 한국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KR&C(前 정리금융공사)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K-sure 한국무역보험공사(前 한국수출보험공사), 한국투자공사
 - ※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의 경우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독점적 발행 권한(수출입은행법 제20조제1항), ② 수출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(동법 동조제2항), ③ 손실금에 대한 정부 보전(동법 제37조) 등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됨.
- 상기기관중 한·미 FTA는 적용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(총 5개)
 - 한국산업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수협, 한국주택금융공사

단기 세이프가드 (부속서 11-사)

- ▣ 우리 “외국환거래법” 제6조와 ‘단기 세이프가드’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 합의
 -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
 - ※ 단, 필요시 미측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
 - ② 몰수적이지(confiscatory) 않을 것
 - ③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금지
 - ④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
 - ⑤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피해야 하며, 경제여건 개선시 점진적 해제

⑥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

⑦ 신속하게 공표

-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·송급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적용

※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불허

- 경상거래의 경우, IMF상 절차를 따르고 미국과 사전 협의하여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

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

※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

■ WTO 유보 내용 확인

- 양국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유보한 내용은 한·미 FTA상 허용되는 건전성제도 등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(부록III-가).

■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

-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, 영업직원의 수,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(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1번째 유보).

■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

-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%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(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3번째 유보).

▣ 한국거래소 ·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제한

-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함(부속서 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2절 3번째 유보).

참고 한 · 미 FTA상 한국의 금융서비스 유보목록 개요

〈 Annex III (금융서비스 유보) : 18개 〉

번호	성격	유보 분야	대상 의무	내 용
1	현재	보험	MA	1) 상업은행, 상호저축은행,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,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. 2) 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,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
2	현재	보험	CBT	“강제적인”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종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. *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,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
3	현재	은행 · 기타	NT	1) 외국금융기관은 “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”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 · 은행지주회사 지분 10% 초과 보유 가능 2) – 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 기준 적용 – 자연인은 지분 10% 초과 보유 불가 –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% 초과 보유 불가. 단,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%까지 가능
4	현재	은행 · 기타	NT	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* 단,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
5	현재	은행 · 기타	MA	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· 선물시장 운용 가능

※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MA:시장접근, CBT:국경간 무역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

번호	성격	유보 분야	대상 의무	내 용
6	현재	은행 · 기타	MA	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·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
7	현재	은행 · 기타	MA	한국증권선물거래소 · 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 ·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· 결제 업무 수행 가능
8	현재	은행 · 기타	CBT	한국 거주자 · 금융기관 · 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, 옵션,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
9	현재	은행 · 기타	NT	1) 외국은행 · 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) 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
10	현재	은행 · 기타	MA	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)신용협동조합 2)상호저축은행 3)여신전문금융회사 4)종합금융회사 5)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)신용정보회사 7)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)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)채권평가회사
11	현재	은행 · 기타	MA	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
12	현재	은행 · 기타	NT	정부지원기관(산은, 기은, 주택금융공사, 농협, 수협)에 대해 채권보증, 손실 보전,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
13	현재	은행 · 기타	SMBD	주택금융공사, 농협,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.
14	현재	은행 · 기타	NT	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
15	현재	은행 · 기타	MA	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
16	미래	보험	CBT	“강제적인”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*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,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
17	미래	은행 · 기타	NT	정부 소유 · 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,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
18	미래	은행 · 기타	NT	한국증권선물거래소,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

*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MA:시장접근, CBT:국경간 무역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